

도시관리계획(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목동 408-78)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408호(2023.09.14.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673호(2025.12.04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하여, 2026년 제1차 양천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2026.05.21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
2026년 06월 11일

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

1. 결정(변경) 취지

- 「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」 내 목동 408-78번지 부지의 목1동 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원활한 공공청사 이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

2. 도시관리계획(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나.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다. 공공기여 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라.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1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2) 건축물 용도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3) 건축물 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4) 건축물 배치·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

가) 건축선 계획(변경)

(1) 주거지역(공동주택용지) 및 기타지역 : 변경

○ 기정

구 분	도면 표시	적용지역	계획기준		
			주거지역 (공동주택용지)	기타지역	비 고
건축한계선	I	이대목동병원 목동동로 연접부오목로변	확지선으로부터 4m		중심지역 및 기존시가지 연접가로
	II	목동중앙로(4단지 외), 목동서로, 목동동로, 중앙로32길, 목동로3길 10·11·12단지 간 목동동로, 오목로, 목동동로4길, 목동동로8길, 목동서로10길, 목동서로12길	확지선으로부터 6m		단지 간 사이가로 및 그 외 경계부
		목동중앙로(4단지)	확지선으로부터 8m		
		그 외 이면부, 7단지 서측경계부, 9단지 북측경계부, 14단지 구역경계부	확지선으로부터 6m	-	
		안양천로변, 신월로	-	확지선으로부터 6m	안양천 및 경관녹지 연접가로
	III	목동 900-4 안양천로변, 신정 313-1 목동로변	-	확지선으로부터 10m	안양천 및 경관녹지 연접가로
	IV	목동서로2길, 오목로52길, 신정 329-12 목동동로변, 목동로8길	-	확지선으로부터 1m	기타지역 변 가로
	VIII	목동서로변 (목동 408-78)	-	확지선으로부터 3m	
	VI	목동동로8길	확지선으로부터 6~10m	-	14단지 중앙 가로
	VII	목동로3길변	확지선으로부터 6m	-	12단지유치원
고층부 벽면한계선 (15층 이상 건축물의 11층 이상 적용)	V	국회대로, 목동로	확지선으로부터 10m	확지선으로부터 6m	광역통경축
		국회대로, 목동로	확지선으로부터 13m	-	

※ 특별계획구역 내 저층부 건축지정선(2층 이하) 적용구간은 적용 배제

※ 특별계획구역 1-3내 열린공지 설치구간은 계획지침 및 결정도에 따름

※ 기타지역(목동 900번지)내 공개공지 설치구간은 계획지침 및 결정도에 따름

○ 변경

구 분	도면 표시	적용지역	계획기준		
			주거지역 (공동주택용지)	기타지역	비 고
건축한계선	I	이대목동병원 목동동로 연접부 오목로변	확지선으로부터 4m		중심지역 및 기존시가지 연접가로
	II	목동중앙로(4단지 외), 목동서로, 목동동로, 중앙로32길, 목동로3길 10·11·12단지 간 목동동로, 오목로, 목동동로4길, 목동동로8길, 목동서로10길, 목동서로12길	확지선으로부터 6m		단지 간 사이가로 및 그 외 경계부
		목동중앙로(4단지)	확지선으로부터 8m		
		그 외 이면부, 7단지 서측경계부, 9단지 북측경계부, 14단지 구역경계부	확지선으로부터 6m	-	
		안양천로변, 신월로	-	확지선으로부터 6m	
	III	목동 900-4 안양천로변, 신정 313-1 목동로변	-	확지선으로부터 10m	안양천 및 경관녹지 연접가로
	IV	목동서로2길, 오목로52길, 신정 329-12 목동동로변, 목동로8길	-	확지선으로부터 1m	기타지역 변 가로
	IX	목동서로변 (목동 408-78 각각부)	-	확지선으로부터 1.5m	
	VIII	목동서로변 (목동 408-78)	-	확지선으로부터 3m	14단지 중앙 가로 12단지유치원
	VI	목동동로8길	확지선으로부터 6~10m	-	
	VII	목동로3길변	확지선으로부터 6m	-	
고층부 벽면한계선 (15층 이상 건축물의 11층 이상 적용)	V	국회대로, 목동로	확지선으로부터 10m	확지선으로부터 6m	광역통경축
		국회대로, 목동로	확지선으로부터 13m	-	

※ 특별계획구역 내 저층부 건축지정선(2층 이하) 적용구간은 적용 배제

※ 특별계획구역 1-3내 열린공지 설치구간은 계획지침 및 결정도에 따름

※ 기타지역(목동 900번지)내 공개공지 설치구간은 계획지침 및 결정도에 따름

- 건축한계선 계획 변경 사유서

구분	변경사유
변경	· 경계복원 측량 결과에 따른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복합청사의 기능적 공간 확보 및 디자인을 유지하여 주민 서비스의 질과 도시 미관적 상징성을 제고하고자 건축한계선 변경 (3m → 1.5m)

(2) 중심지역(목동중심지구) : 변경없음

나) 건축물 배치 및 형태·색채 등 계획 : 변경없음

다) 대지 안의 공지 계획 : 변경없음

5)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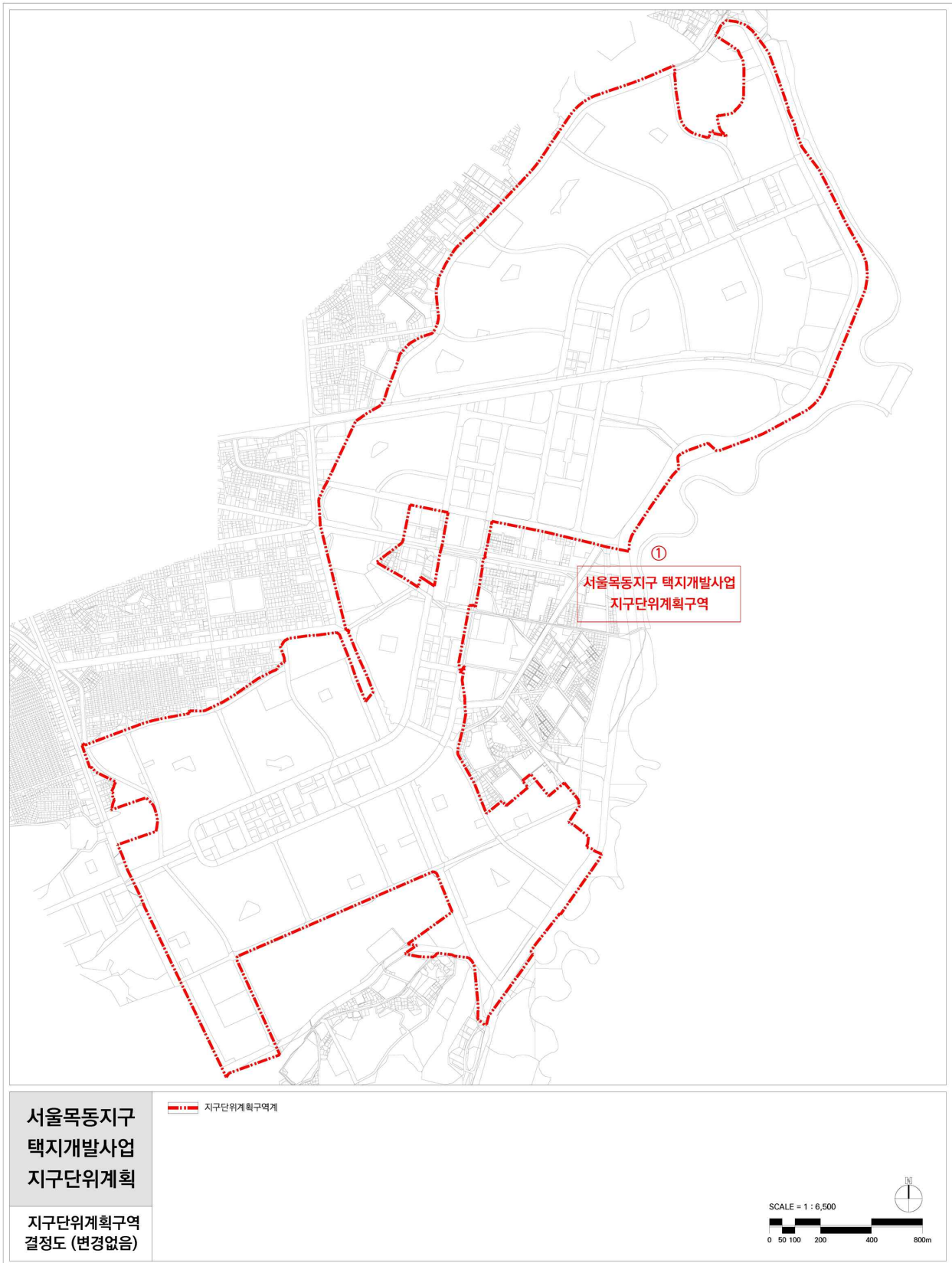
마.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3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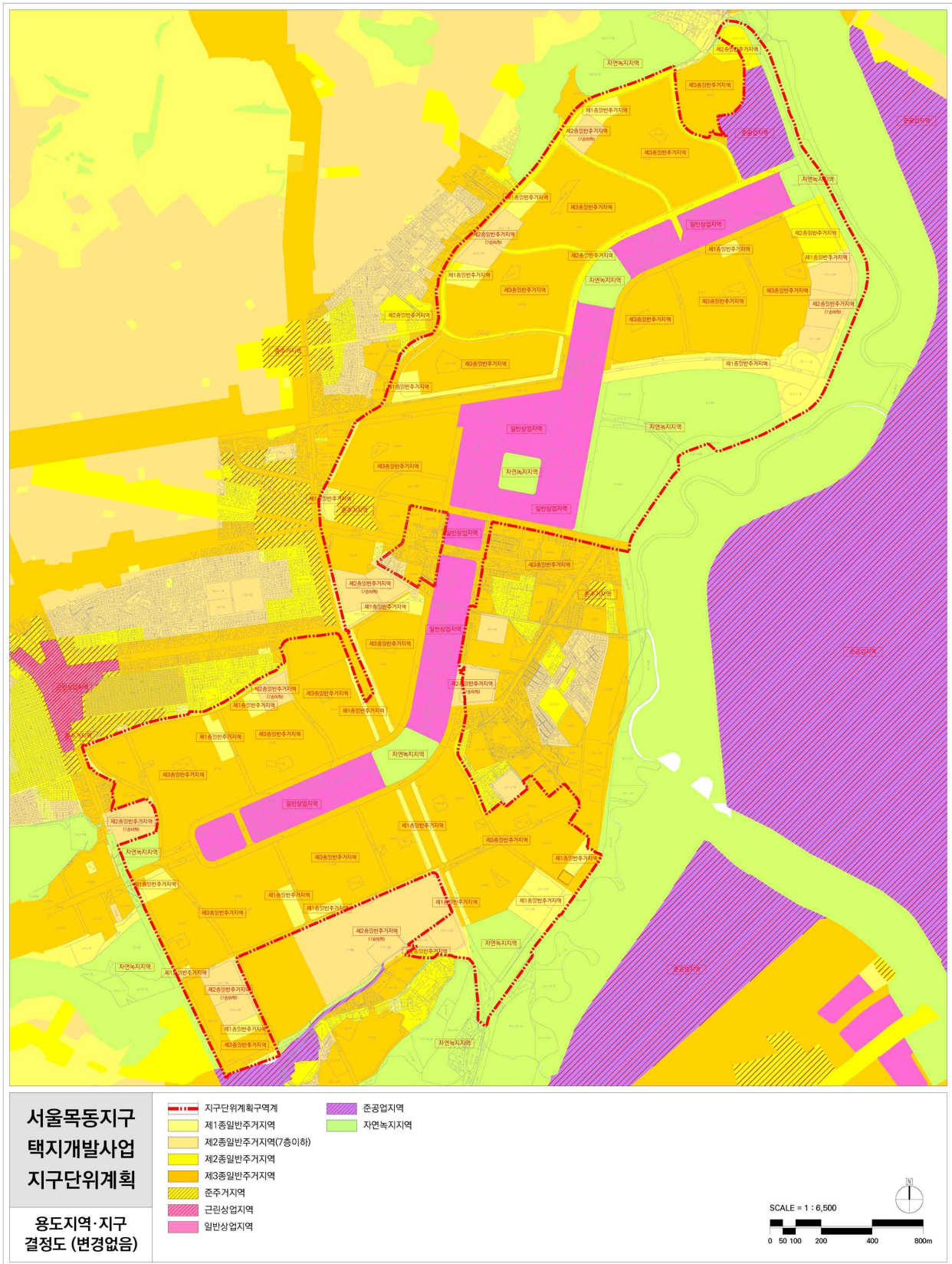
※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.

4. 관계도서는 양천구청 도시계획과(☎2620-3507)에 비치·열람하고 있습니다.

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(변경없음)



■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도 (변경없음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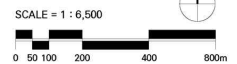
■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(변경없음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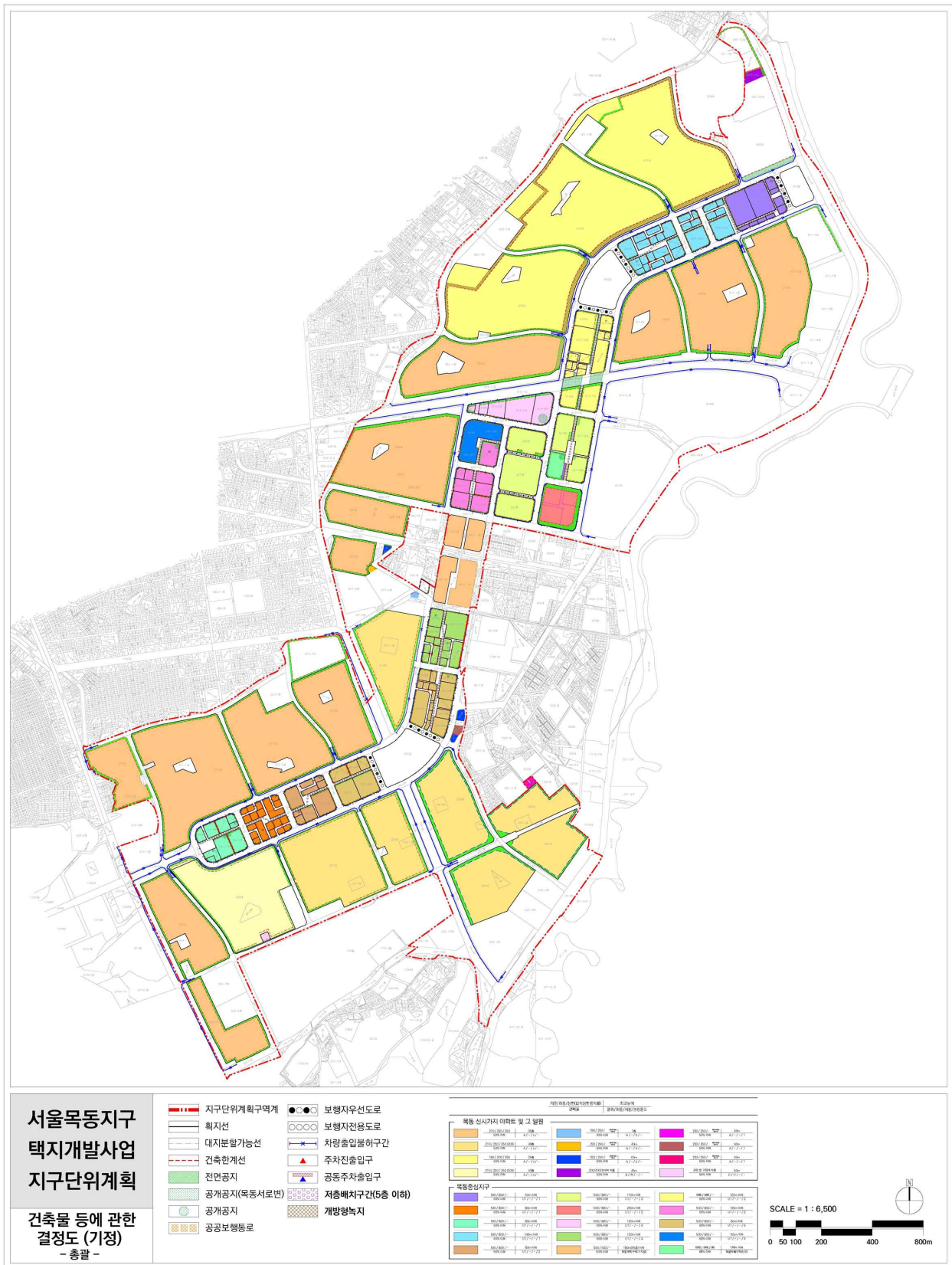
서울목동지구
택지개발사업
지구단위계획

자구단위계획구역계

A1	가구	주거지역 및 기타지역(공동주택용지 및 그 일원)
B	회지	
B1	가구	중심지역(복동중심지구)
C1	회지	
대지분할가능선		



■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(기정)



서울목동지구
택지개발사업
지구단위계획

	지구단위계획구역		보행자우선도로
	회차선		보행자전용도로
	대차보합가능선		차량출입용허구간
	간혹학원개선		주차진출입구
	전면공지		공동주차출입구
	공개공지(목동주로만)		저층배차구간(5층 이하)
	공개공지		개방형녹지
	공공보행도로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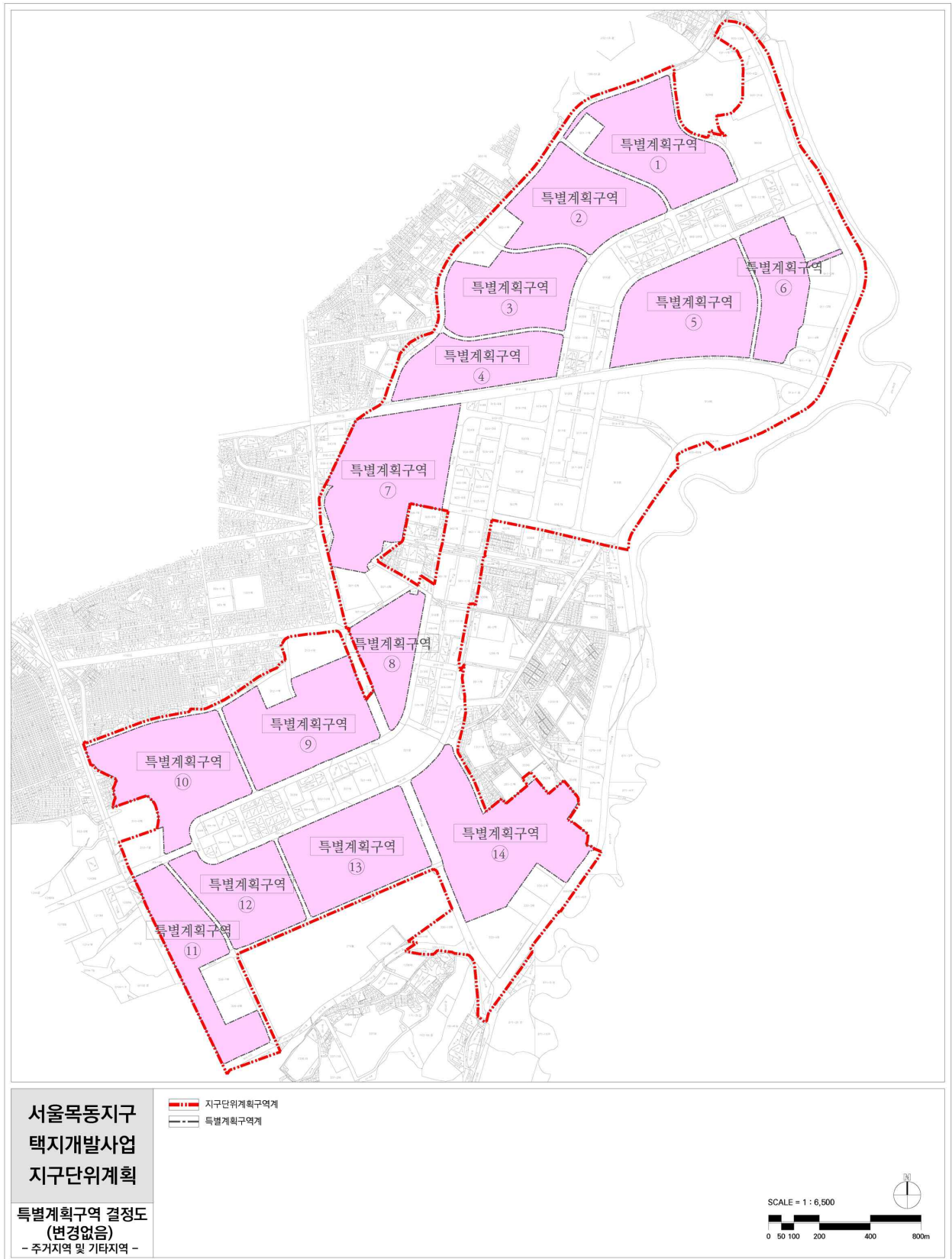
[illegible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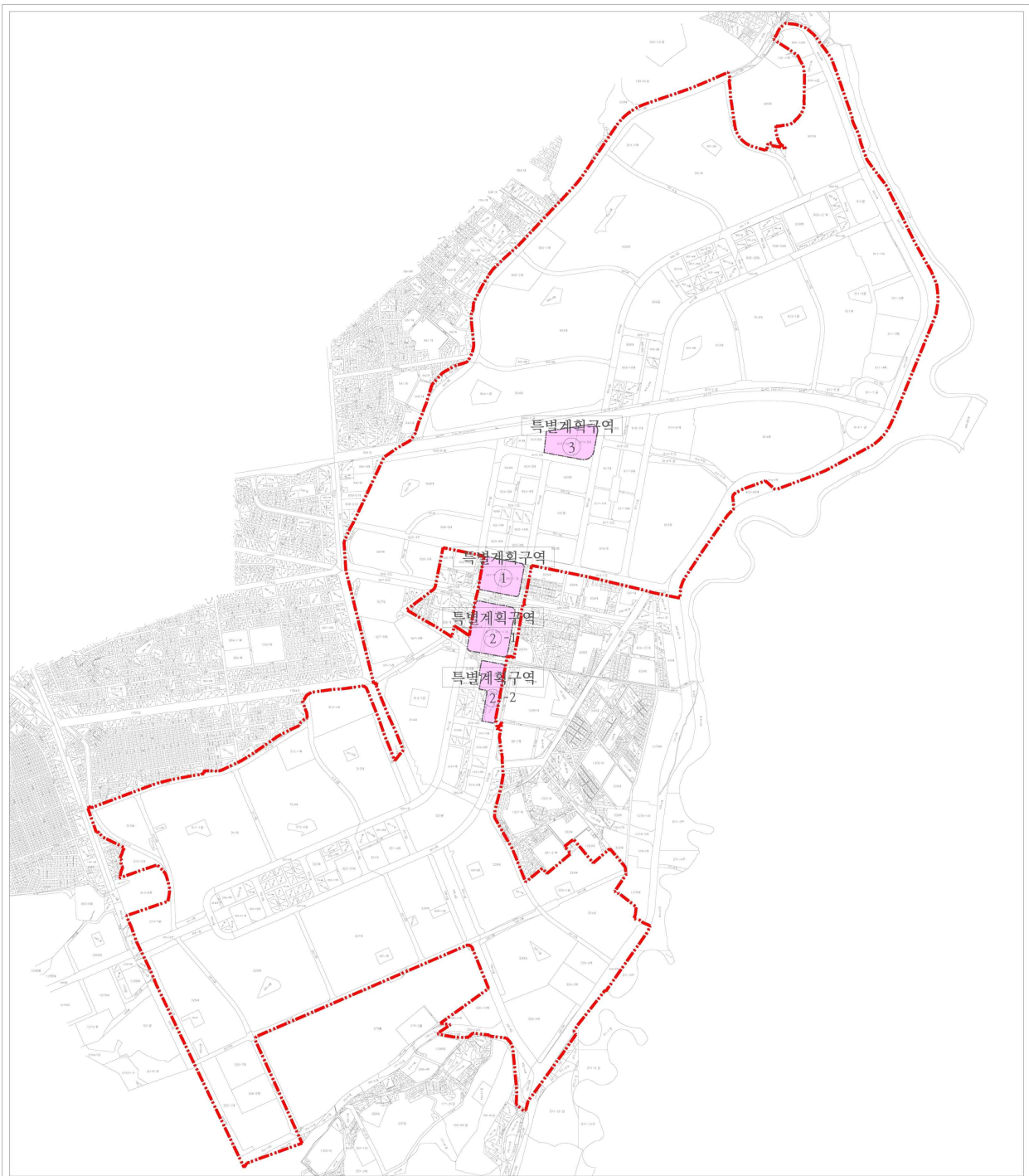
SCALE = 1 : 6,500



[illegible][illegible]

■ 특별계획구역 결정도 (변경없음)





서울목동지구
택지개발사업
지구단위계획

특별계획구역 결정도
(변경없음)
- 중심지역 -

--- 지구단위계획구역
--- 특별계획구역

SCALE = 1 : 6,500
0 50 100 200 400 800m

